

「구미 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구미무을농악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전국에 구미무을농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농악을 활성화하여 전통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 지역전통농악의 저변확대 및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 시민 화합에 기여하고 있는 구미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행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나. 추진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 2)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 3)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제5조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위탁사무

- 1) (기획) 경연일정 수립, 심사기준 마련, 시상계획 수립
- 2) (운영) 심사위원 구성, 참가자 모집, 경연 진행
- 3) (행정) 예산수립 및 사업비 집행, 관계기관 협력

라. 위탁기간 : 2023. 5 ~ 12월.

마. 위탁조건

- 1)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2) 최근 2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관련분야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 1)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 평가내용 : 사업계획, 전문성,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
- 3)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사. 소요예산 : 140,000천원(도비 42,000, 시비 98,000)

(단위 : 천원)

전체예산	진행비	인건비	홍보및인쇄비	시상금
140,000	45,860	42,300	11,500	40,340

아. 성과평가결과(재계약/재위탁일 경우 작성) : 정산 시 성과평가 실시
자.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3. 부서의견

- 내실 있는 행사운영 및 경연대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함.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2023년 제1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사진대지

□ 위 치 도(새마을운동테마공원)



□ 경연대회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 민간위탁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
-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제4조(경비의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56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시 비	98,000	98,000	98,000	98,000	98,000	490,000
민 간						
기 타						
합 계	140,000	140,000	140,000	140,000	140,000	700,00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최태식(☎661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세부내역	금액(천원)
계		140,000
진행비	○ 출연자, 스태프, 심사위원 식대 8,000원×40명×6식	1,920
	○ 심사의원 스태프 숙소 70,000원×12명×2일	1,680
	○ 스태프, 심사위원 음료 간식비 120,000원×2일	240
	○ 대기실 부스설치 60,000원×25식×2일	3,000
	○ 음향운영비(20kw이상) 2,500,000원×2일	5,000
	○ 무대설치비(30평) 4,500,000원×1식	4,500
	○ 부스설치비 120,000원×6식×2일	1,440
	○ 대기실천막설치 30,000원×20식×2일	1,200
	○ 조명 1,000,000원×2일	2,000
	○ 행사보험 1,000,000원×1식	1,000
	○ 체험악기대여 250,000원×2일	500
	○ 시민체험(떡매치기) 200,000원×2일	400
	○ 시민체험(악기체험) 200,000원×2일	400
	○ 시민체험(전통문화체험) 200,000원×2일	400
	○ 행사장 청소용역 400,000원×1식	400
	○ 영상제작 600,000원×2일	1,200
	○ 단체복 40,000원×40식	1,600
	○ 사무용품(토너외 소모품) 580,000원×1식	580
	○ 방역용품 400,000원×1식	400
	○ 관내 참가단체 지원금 500,000원×20팀	10,000
	○ 관외 참가단체 지원금 800,000원×10팀	8,000
인건비	○ 사회자 500,000원×2일	1,000
	○ 심사위원 심사비 500,000원×5명×2일	5,000
	○ 무형문화재단체 초청공연비 4,000,000원×2팀	8,000
	○ 명인전 출연비 1,500,000원×5명	7,500
	○ 지정반주비 400,000원×4명	1,600
	○ 무형문화재농악단체 출연비 4,000,000원×2팀	8,000
	○ 상장글씨 300,000원×2일	600
	○ 연출비 2,000,000원×1명	2,000
	○ 무대감독 1,000,000원×1명	1,000
	○ 행사진행 500,000원×2일	1,000
	○ 대회진행 500,000원×2일	1,000
	○ 보조진행 200,000원×4명×2일	1,600
	○ 스태프비 100,000원×20명×2일	4,000

구분	세부내역	금액(천원)
홍보비	○ 대형 현수막 150,000원×4식 600 ○ 배너 광고 40,000원×50식 2,000 ○ 포스터 2,000원×1,000개 2,000 ○ 대회요강 리플렛 2종 1,200원×1,500부 1,800 ○ 공연 팸플렛 3,000원×1,500부 4,500 ○ 인터넷 홍보 500,000원×1식 500 ○ 우편비 100,000원×1식 100	
시상금 (전국일반부)	○ 대상 시상금 7,000,000원×1식 7,000 ○ 금상 시상금 5,000,000원×1식 5,000 ○ 은상 시상금 4,000,000원×1식 4,000 ○ 동상 시상금 3,000,000원×1식 3,000 ○ 장려상 시상금 1,000,000원×3식 3,000 ○ 특별상 시상금 300,000원×2식 600	
시상금 (전국학생부)	○ 대상 시상금 3,000,000원×1식 3,000 ○ 금상 시상금 2,000,000원×1식 2,000 ○ 은상 시상금 700,000원×1식 700 ○ 동상 시상금 500,000원×1식 500 ○ 장려상 시상금 300,000원×3식 900 ○ 연주자상 시상금 100,000원×1식 100 ○ 지도자상 시상금 200,000원×1식 200	
시상금 (관내경연)	○ 대상 시상금 2,500,000원×1식 2,500 ○ 금상 시상금 2,000,000원×1식 2,000 ○ 은상 시상금 1,500,000원×1식 1,500 ○ 동상 시상금 400,000원×2식 800 ○ 장려상 시상금 200,000원×14식 2,800 ○ 지도자상 시상금 200,000원×2식 400 ○ 개인상 부상(장구) 170,000원×2식 34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39조 (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제4조(경비의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축제 및 공연, 연주회, 전시 등 행사 개최
2.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기획사업 포함)
3.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 사업 및 경연(공모 포함) 대회
4. 강좌, 발표회, 예절교육, 체험·참여형 교실, 창작교실 등 지역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
5. 문화예술에 관한 작품집 및 동인지 발간
6.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전문지, 기관지 발간 포함)
7. 강연회, 세미나, 학술대회 등 문화예술 교육 및 학술활동 지원
8. 전통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9. 향토사 등 전통문화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전승

제5조(행사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사업(행사·축제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구미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수행 실적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7.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 시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박 정 은
	팀 장	김 종 우
	담 당 자	최 태 식 (480-6613)